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 명 서

2020. 4.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세 무 과]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

제 안 설명 서

설 명 자: 세무과장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감면 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지역의 건물주 및 의료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지원기준과 대구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따라 구세를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피해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으로는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와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인 관내 보훈병원을 비롯한 7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 감면 세목 및 감면율은,
먼저 2020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7월 건축물분 재산세액에서 감면하는 지원안을 마련하였고,

다음으로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 주민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면제 하며, 과세기준일(6. 1.) 현재 의료업에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25%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액 규모는

- 지원 의료기관 7개소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는 총 9억6천2백 만원으로 추계되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추가되면 감면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향후 대구시에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할 계획입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이번 구세 감면 동의안은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책이므로 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0082021
----------	---------

제출일자: 2020. 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세무과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 및 의료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구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사전에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감면기준

가. 감면 대상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도 상반기(1~6월) 중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나. 감면 세목 및 감면율 (2020년도에 한함)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건축물분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의 10% 재산세 감면, 감면액은 1백만원 한도)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25% 감면), 주민세 재산분 (면제), 주민세 종업원분 ('20. 3월 ~ 8월 신고분(6월간) 면제)

다. 재산세 감면 범위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2020년 상반기(1~6월)중에 ‘착한 임대인’ 이 소상공인 임차인 등의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이 도박·사해행위, 유·흉·향락업 등 운영자는 제외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 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3. 감면 추계액: 962백만원 (예상액)

▶ 코로나19 대응 지원 의료기관 감면 추계

(금액 단위: 백만원)

연번	의료기관	구분	소재지	감면 세목 및 금액 (예상금액)				비고
				소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감면세액 합계)				962	723	52	187
1	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월곡로 60	187	141	10	36	
2	계명대 동산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035	557	425	30	102	
3	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감삼북길 141	71	41	3	27	
4	보광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128	39	26	2	11	
5	세강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220	32	19	2	11	
6	삼일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월배로 446	26	24	2		건축물 임대
7	더블유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632	50	47	3		건축물 임대

※ ‘착한 임대인’(임대료인하 건물주) 재산세 감면액은 향후 건물주가 별도 신청시 세액계산을 통해 산정이 가능하여 미 반영

4.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동의안』 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5.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여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감면액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공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 2. 5.)] 1부.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통보 [대구시 세장담당관-3660(20. 3. 23.)] 1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 ·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 · 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 · 적용 대상자 · 세목 ·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 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 ⑧. (생 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 ⑨. (생 략)

참고 2

행정안전부 공문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 2. 5.)]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피해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적극적 지방세 지원 필요
 - 메르스 당시('15년) 지방세 지원: 총 14.6억원(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 등 감면 3.4억원, 납기연장 6억원, 징수유예 5.2억원 등)

□ 지원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 예: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통업소 제외)

□ 지원 내용

- (기한연장) 6개월(최대1년) 범위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등), 주민세 종업원분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 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 (고지유예·분할고지) (예) 취득세 무신고분 부과고지 시 가능
 - (체납액 징수유예) (예) '19.12월분 자동차세, '20.1월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체납처분 유예) (예) 체납중인 모든 세목에 대해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 예: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등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대구광역시 공문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통보[대구시 세정담당관 3660(20. 3. 23)]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지방세 감면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 착한 임대료 확산에 동참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방안 의견 수렴(3.4.)
 -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청에서 권고 기준(안) 통보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의료기관·기업

□ 지원 내용

①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 (균등분 주민세^{시군세}) 2020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 주민세 면제

②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29억원(예상)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재산세 25% 감면

○ (주민세)

- 종업원분^{구군세} : '20. 3월 ~ '20. 8월분(6월간)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 재산분^{구군세} : 2020년도 재산분 주민세 면제

③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의료기관 편중에 따른 구·군 부담 불균형 완화와 착한 임대료 확산을 위한 구군 부담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구세 감면 계획

- 「코로나19」로 발생된 경제적 위기를 상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건물주 및 의료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구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극복을 위해 감면 추진
 -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 (구세)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및 지원 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 (시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기업 지방세 감면
 - 신속한 감면으로 적기에 지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감면조례 개정이 아닌 감면동의안 의회 제출로 행정처리 기간 단축
-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지방세 지원(감면) 계획 통보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542('20. 2. 5.) 및 대구시 세정담당관-3660('20. 3. 23.)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2

감면 기준

□ 구세 감면 대상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중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 병원, 선별 진료소 운영 병원 등

* 관내 지원의료기관 현황 (전담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

(‘20. 3월 현재)

계	전담병원 (국가 지정)	선별진료소 운영	비 고
7개소	대구보훈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구병원, 보광병원, 삼일병원, W병원, 세강병원	지원병원 증가 시 추가 반영

□ 구세 감면 세목 및 감면율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재산세_{건축물, 토지}) 지원 의료기관 직접 사용 부동산(의료용) 25% 감면
- (주민세_{종업원분}) : 지원병원 ‘20. 3월 ~ 8월 신고분(6월간) 면제
 - 신고·납부 기준 : 사업주가 지급하는 월급여총액(1.5억 원 초과시) × 0.5%
- (주민세_{재산분}) : 지원병원 ‘20년도 7월 신고분 면제
 - 신고·납부 기준 : 과세기준일(7.1) 현재 330㎡ 초과 사업소 면적 × 250원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임차인이 사행성 · 유흥업종 운영시 제외)

- (재산세_{건축물})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100만원 한도

○ 주민세 종업원분 등 월별 신고분(기 납부분)은 환급 적용

□ 구세 감면액은 대구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예정

재산세 감면 적용 방법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0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해당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감면액 1백만원 한도)

* 2020년 상반기(1월~6월) 중 임대료 인하액

(신청방법) 2020.6.1.~ 6.30.까지 증빙서류* 첨부 신청 (전·후 신청도 가능)

* 증빙서류 :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입증서류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예시] 상반기(1~6월) 내에 임대료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세제 지원

○ 재산세 감면안 (2020. 7월 건축물분 재산세)

(재 산 세) 임대료 인하액의 10% 세액 감면	: <u>10만원 지원</u>
(지방교육세) 재산세 감면액의 20% 자동 연동	: <u>2만원 지원</u>

○ 임대소득 세제 지원 (2021. 5월 소득세 확정신고분)

(국세지원액)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50만원 지원
(지방소득세) 자동 10% 지원효과 발생	: <u>5만원 지원</u>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세는 대구광역시에서 감면동의안 의결 (2020.3.26.의결)

-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 면제 (5만원→면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주민세 감면예상액 (A + B)	균등분 주민세(A)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B) (법인사업자)	비 고
합계	1,385	922	463	

국세분야 (지방소득세와 연계) : 조특법 '20. 3. 17 국회본회의 통과

- ▶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기준 15%~30% → 개정 30%~60%)
- ▶ 착한 임대료 인하 건물주(임대사업자) 법인세·소득세 감면
 - '20.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 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 ('20. 3~6월분)

3**구세 감면 추계액**

지원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 총 962백만원 (예상액)

(금액 단위 : 백만원)

연번	의료기관	구분	소재지	감면 세목 및 금액 (예상금액)				비고
				소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재산세	
	(감면세액 합계)				962	723	52	187
1	보훈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월곡로 60	187	141	10	36	
2	계명대 동산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035	557	425	30	102	
3	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감삼북길 141	71	41	3	27	
4	보광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128	39	26	2	11	
5	세강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구마로 220	32	19	2	11	
6	삼일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월배로 446	26	24	2		건축물 임대
7	더블유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달구벌대로 1632	50	47	3		건축물 임대

☞ 착한임대료 감면은 신청내용에 따라 확정되어 감면추계액 산정에서 제외

4**기타 사항**

- 대구시 및 구·군이 동시에 감면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 구·군 토의를 통해 대구시 전체 공통 감면안 마련
- “착한 임대료” 건물주 명단 확인 관련 경제지원과 상호 협조
- 감면 동의안 방침 최종 확정시 의회 의결(4월) 신속히 진행
- 구 의회 사전 협의를 통해 감면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동의안 의회의결 절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

